

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

발행·편집 / 부산광역시 남구  
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 
(48452)  
☎ 607-4068 / FAX 607-4919

## 공 고

- ▶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-404호  
[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2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부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24-404호

##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1일

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

### 1. 자치법규명

-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개정이유

-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‘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’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’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 축소(안 제14조)
- 수탁기관 감사결과 위법·부당사항에 대한 제재 사항 추가(안 제23조)
- 성과평가 대상 정비(안 제24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4년 3월 31일까지**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(참조:기획감사실)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 사항 등

※ 보내실 곳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(대연동)  
부산광역시 남구청장(참조 : 기획감사실)
- 전화번호 : 051) 607-4032 (Fax. 607-4019)
- 이 메 일 : madamekh@korea.kr

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의결주문

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소기업 옴부즈만의 ‘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’ 및 국민권의 위원회의 ‘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’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한 축소(안 제14조)
- 나. 수탁기관 감사결과 위반·부당사항에 대한 제재 사항 추가(안 제23조)
- 다. 성과평가 대상 정비(안 제24조)

4. 주요토의과제 : 해당사항 없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117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신.구조문 대비표 : 붙임
  - 2) 입법예고 : 2024. 3. 11. ~ 2024. 3. 31.
  - 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예정
  - 5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 - 6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<b>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b>
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2항 중 “15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제23조제2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”로 한다.
제2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제24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사무
2.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
<b>부        칙</b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	
현     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 정    안
제14조(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) ① (생 략)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제14조(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1 0일 ----- ----- ----- -----
제23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23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하고,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제24조(운영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	제24조(운영성과평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<p>를 확인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1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사무</p> <p>2.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## 관련 법령

### ▣ 지방자치법

-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